

[일련번호 : 41]

양 천 구

시 정 및 통 보

제 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환급처리 미흡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허가 및 착공·준공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에 따르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같은 법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르면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3조의 2에 따르면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도로 굴착·복구 허가, 도로 굴착복구 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는 도로 굴착·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방법)에서는 구청장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①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법」 제70조에서는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과오납 점용료 반환 의무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이란 법적근거가 없는 이득을 말한다. 또한 과오납의 원인이 도로관리청에게 있는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점용료의 과오납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서 「도로법」 제70조의 과오납 점용료 반환의무는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도로관리청의 과오납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과는 [표1]과 같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취소 승인된 공사 중 이미 납부 완료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과오납 결정을 하고 환급처리를 해야 하나 총 17건, 21,611,150원의 환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표2]와 같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도로점용허가 후 공사 미시공으로 취소요청한 건에 대하여 취소 승인을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기납부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총 5건, 2,565,780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도로점용 허가 미환급 내역

연번	허가번호	업체명	금액(원)	취소승인일	비고
1			548,050	2022.07.04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2			316,260(복구) 15,840(점용)	2022.07.0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3			10,856,240(복구) 316,800(점용)	2022.07.0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4			66,110	2022.10.20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5			2,068,100	2022.12.01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6			288,840	2022.12.02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7			2,434,860	2022.12.0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8			1,217,430	2022.12.0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9			384,120	2023.02.01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0			386,870	2023.03.1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1			293,810	2023.05.24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2			162,110	2023.06.23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3			237,180(복구) 12,030(점용)	2024.03.18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4			703,740(복구) 18,480(점용)	2024.03.18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5			328,930	2024.04.02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6			474,370	2025.03.26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17			480,980	2025.06.24	과오납 및 환급 내역 없음
	총 계		21,611,150		

[표2] 도로점용허가 취소 승인 지연 내역

연번	신청자명	허가번호	착공일	준공일	원인자부담금 (원)	지적사항
1			2024.5.13.	2024.7.12.	444,100	취소승인 지연에 따른 환급 미이행
2			2024.5.13.	2024.7.12.	444,100	취소승인 지연에 따른 환급 미이행
3			2024.7.15.	2024.8.31.	387,860	취소승인 지연에 따른 환급 미이행
4			2024.7.15.	2024.8.31.	454,910	취소승인 지연에 따른 환급 미이행
5			2024.7.15.	2024.8.31.	834,810	취소승인 지연에 따른 환급 미이행
	총 계				2,565,780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환급처리를 위해 수차례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환급 신청 독려 전화와 공문발송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해당 신청자에 적극 독려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취소 승인 지연 관련하여 신청자가 공사 취소로 신청하였어야 하나 준공계를 접수하여, 공사취소 승인과 환급 진행이 불가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건을 시스템 상 초기화한 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도로점용 공사 취소 또는 취소 승인 지연 등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금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 및 환급 절차 안내 등 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아울러, 취소 승인 및 환급 업무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